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 절차서

(Procedure for Safety Inspection of Stage Facility)

주식회사 티디에이
Theater Design & Automation

목 차

- 1 목적 및 적용범위
- 2 용어의 정의
- 3 검사 인력
- 4 고객서비스 제공
- 5 검사 수수료
- 6 무대시설 검사
- 7 검사장비 관리
- 8 관련문서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본 절차서는 티디에이에서 수행하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대시설 :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 2) 무대기계·기구 :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한다.
- 3) 상부무대시설 :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 4) 하부무대시설 :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 5) 무대시설안전진단 :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검사 인력

3.1 인력 구성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인력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계분야 자격자 5명(기술사 1명 포함)
- 전기분야 자격자 3명
- 금속분야 자격자 2명

3.2 문화기술 연구소장

해당 분야별 직무분장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3 기술책임자

기술책임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검사결과 검토 및 보고서의 승인, 서명 권한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문화기술 연구소장이 자격을 갖추어서 수행한다.
- 기술책임자(부)는 기술책임자(정)을 보좌하여 무대시설 검사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술책임자(정)의 부재 시 이를 대리한다.

3.4 실무자

실무자는 문화기술 연구소장을 보좌 하고 고객에게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다음 사항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개인별 업무 분장에 따라 시험의 총괄 수행
- 검사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
- 검사장비 및 보조 장치의 유지관리
- 검사관련 자료 및 보고서 관리

4 고객서비스 제공

4.1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 1) 실무자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 상황 및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 2) 실무자는 계약, 업무수행 및 수행결과를 근거로 고객에게 권고 등을 할 경우에는 고객이 긴장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3) 실무자는 업무가 지연되어 수행되는 경우, 고객에게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연 상황 및 지연 일자 등을 통보한다.

4.2 고객의 의견수렴

문화기술 연구소장은 고객 만족도조사 등 체계적인 방식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5 검사 수수료

티디에이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6 무대시설 검사

6.1 일반사항

문화기술 연구소장은 해당 업무절차서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6.2 검사 절차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6.3 검사 신청

- 1)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고객이 안전진단 문의를 요청하는 경우, 실무자는 접수 및 안전진단 절차 등 고객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2) 고객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티디에이에 제출하고 실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수료 및 안전진단 계획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 3) 기술책임자는 안전진단 업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계약 단계별 해당 계약을 검토한다.

6.4 검사 실시

- 1) 실무자는 검사 계획에 따라 업무분담내용을 파악하고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안전장구 등을 준비하여 검사에 임한다.
- 2) 실무자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24호)과 고객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 3) 실무자는 현장검사 완료 후 안전진단 결과를 정리하여 공연장관리자에게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검사보고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한다.

6.5 검사 결과 보고

- 1) 실무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의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결과보고서 초안 1부를 작성하여 문화기술 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2) 실무자는 문화기술 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3부 복사·제본하여 제출기한 내에 공연장관리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3) 실무자는 다음 기한을 준수하여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고객에게 제출한다. 단, 고객과 티디에이의 합의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따른다.

안전진단 대상 구동식 무대시설 수	업무완료기한(결과보고서 제출 기준)
0개	현장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
1 ~ 19개	현장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
20 ~ 39개	현장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40개 이상	고객과의 협의로 결정

- 4) 실무자는 이미 발행한 보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원본을 회수한 후 완전한 신규 보고서로 발급한다.
- 6) 고객은 티디에이에서 발행한 결과보고서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화기술 연구소장은 고객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티디에이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검사장비 관리

7.1 일반사항

- 1) 기술책임자는 정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장비관리담당자 및 보조자를 임명한다.
- 2) 장비관리담당자는 검사 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장비 사용 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며,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한다.

7.2 교정

- 1) 장비관리담당자는 KOLAS-G-103의 교정주기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장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한다.
- 2) 장비관리담당자는 모든 검사 장비의 교정 결과에 대해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7.3 점검

- 1) 장비관리담당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점검한다.
- 2) 기술책임자는 장비의 특성과 사용빈도, 보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비의 점검을 지시하고 장비관리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해당 장비를 점검한다.
- 3) 장비관리담당자는 모든 장비의 점검 방법,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

8 관련문서

- 1) 공연법 및 하위법령
- 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